

# 「2010년 제6호 민간부문 내 노동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16년 제108호 일부 개정법」

• 국가·지역: 쿠웨이트

•개정일: 2016년 7월 4일

#### 제1조

「2010년 제6호 민간부문의 노동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국내 금융기관에 있는 근로자의 계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국내 금융기관 내 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쿠웨이트 인력관리청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송금명세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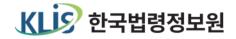
금융기관의 지정, 지급비용 및 수수료 등 계좌에 관한 취급과 이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규칙은 사회노동부장관의 제안에 따른 내각결정을 공포하여 규정한다.

내각결정을 통하여 일부 활동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임금의 국내금 융기관으로의 송금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38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0조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금고와 이에 연루된 근로자 1인당 2,000디나르 이상 1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직한 후 다른 사용자를 위한 근로를 개시한 때에는 새 사용자에 대하여 전항에 명시한 형과 동일한 형에 처하고, 위반한 근로자는 행정기관에서 추방하지 아니 한다.

#### 제140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장관이 지명한 관할직원이 제133조와 제134조에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모든 자는 500디나르 이상 1,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범 시 그 형을 2배로 가중한다.

## 제142조

관할감독관이 적발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경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35조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금고와 500디나르 이상 2,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 제2조

「2010년 제6호 민간부문의 노동에 관한 법률」제146조에 다음의 규정을 추가한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사용자에게 제1항에 명시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간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1%에 상당한 배상지급을 명할 수 있고, 동일한 법원에 대하여 기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고 받은 금액 과 관련하여 제145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 제4조

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